

일간 신문에서 데스크를 본 부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직접 필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취재기자는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기사를 올려 보냈는데 방송이나 타신문사에서는 모두 ‘살아있다’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우리만 죽었다고 보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됐다. 그래서 안에서(데스크) 고쳐서 우리도 살아있다는 식으로 나갔는데 취재기자에게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백선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백선장의 유가족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지만 이 내용 때문에 어떤 언론도 처벌을 받았거나 손해배상을 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다. 우선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혹 소송이 제기됐다하더라도 이런 보도로 과연 데스크가 권한행사만큼 큰 책임을 지게될 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제작과정상 나타난 데스크의 부당한 간섭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보도물을 법정에서 곧이 곧대로 말할 기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제작관행과 기자들의 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위수 판사는 “보도과정에서 데스크의 과오나 실책이 드러나면 당연히 데스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가 현 편집국에서 설혹 데스크의 실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어느 기자가 곧이 곧대로 자기 선배를 벌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한 판사도 수궁이 간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데스크의 입장도 곤혹스럽다. 많은 기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아래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전달, 수렴해야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데스크의 실책이나 과오에 대한 법적책임공방 판례는 보기 힘들다.

3. 언론중재위원회 활성화 방안

가. 언론중재위원회란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이 중재신청을 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반론보도나 추후보도, 정정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기관이다.

1) 반론보도 청구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작성한 반론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가 올바른 사실

관계를 담은 반론문을 직접 작성해 해당 언론사에 그대로 게재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추후보도청구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매체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3) 정정보도 청구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 스스로가 해당 기사의 잘못된 점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정정보도청구는 중재절차와 상관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중재신청은 문제의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안에,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무혐의·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현실적 피해대책과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1) 언론중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현실적 억제효과(보도책임자와 대면 및 피해복구 요구)
- 미래적 예방효과(동일사안, 동일대상에 대해)
- 대안적 PR효과

2)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언론피해상담센터

○ 언론피해 구제관련 법률상담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 1일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 언론분쟁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원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상담료와 소송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을 받기 힘든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피해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후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종사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보도활동이나 언론관련 판결 추이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유사한 언론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 각 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3) 소송과 별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소송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시험
- 경비의 절감과 자문의 효율성

다. 언론중재제도 개선점

1) 접근성을 높인다.

- 현재 중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한데, 특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24시간 인터넷, 팩스 접수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중재위원 선임시 적격성을 심의하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

- 언론인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3) 언론관련 민사소송 전담(희망사항-one stop service system)

- 정간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민사소송(일정액수의 규모에 한해)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피해 구제와 관련된 one stop service system이 구축되어야 한다.

4)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필요

-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이 필요하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를 포함하여 「OhmyNews」나 「미디어다음」 등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 등도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